

## 수입 L/C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의 지급보증 적극 활용

정부에서는 외국환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L/C 개설 기피와 환율상승에 의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L/C 개설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지원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L/C 개설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증한도 : 업체당 100억원
- 보증금액 사정 한도 : 연간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범위내(신용보증기금의 경우)
- 보증요율 : 연율 1%
- 보증대상 기업의 범위 : 현재는 중소기업내 한 하나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

## 조달청의 원자재 수입L/C 개설대행 조건 개선

통상산업부에서는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의 수입 L/C 개설에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과 협조하여 원자재 수입L/C 개설대행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Banker's Usnace L/C에 대해서도 개설대행

- 다만, 조달청이 수출국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입자가 Financing Bank를 확보할 경우에 개설대행이 용이할 것임.

나. At Sight L/C에 대한 지급보증 완화

- Usance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행하되 일람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완화

현 행	완화내용
○ 보증서의 종류 -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서, 종합금융사 보증어음	○ 보증서 종류 추가 -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 발행정기예금증서 - 국채, 지방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공사)발행채권 - 일반보증회사채
○ 보증금액 - 수입대금의 110% 이상 적립	○ 보증금액 - 수입대금의 20% 이상 적립

다. 수입L/C 개설대행 수수료 : 수입대금의 0.1%

##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조달 EDI사업 적극참여 요청

최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조달EDI를 비롯한 수요 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달EDI사업은 내자·시설·경리 등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EDI체제를 갖추어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의 조달업무에 대한 시간·비용·인력 등의 절감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민간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정부 「조달EDI」시범서비스 계획

### \* 사업추진계획

#### □ 추진체제

- 사업주관 : 조달청
- 전담기관 : 한국전산원 (정부 EDI 지원센터 구축)
- 조달업체 EDI 접속중계 처리 (8개 VAN 사업자)
  - 한국전력, LG-EDS, SDS, KT-Net, KL-Net, 데이콤, 보험개발원

#### □ 단계별 계획

구 분	1단계(97)	2단계(98~99)	3단계(200~)
추진개요	시범시스템 구축 - 표준문서개발 (11종)	시범시스템 확대 - 표준문서개발 (40종)	조달EDI 본격운영 - 표준문서개발 (50종)

#### □ 시범사업 추진제

- 추진일정
  - 97. 3~12 : 시범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용
  - 98. 3~ : 시범서비스 개시
- 시범사업 대상업체 선정
  - 조달업체 (내자, 외자, 시설업체 등) 14, 400개사중 300여개 업체 선정예정
- 조달업무 문서거래방법
  - 98. 3부터 정부조달시범업체는 7개 민간VAN사업자 망을 통하여 EDI거래를 추진
- 대상업무

구 분	대 상 업 무	관련기관
공통 (내자, 시설)	- 입찰공고	조달업체
내자 (비제장품)	- 조달요청 접수	수요기관
	- 납품요구 및 통지(단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 납품요구변경 및 통보(단가)	조달업체 수요기관

시설	- 예비(조사)가격 발표	조달업체
	- 입찰보증금 면제각서 제출	조달업체
	- 계약변경 요청서 처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 장기계속계약 요청 및 협의서	수요기관 수요기관
경리	- 입찰 및 계약보증금 수납(내자, 외자, 시설)	조달업체 보험회사 공제조합

## 홍콩 전기용품 새 안전규격 5월 발동

지난해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돼 특구(The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로 지정된 홍콩이 새 전기용품 안전규칙(EPSR : Electrical Products Safety Regulation)을 오는 5월 1일부터 발동할 예정이다. IMF시대를 맞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반환을 앞두고 지난해 5월 2일 전기고시(Electricity Ordinance) 제406호로 새로운 EPSR를 마련, 공포한 바 있는 홍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홍콩으로 유입되는 각종 전기용품에 대해 EPSR를 강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홍콩에 직접 수출하거나 홍콩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간접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EPSR에 따른 자체시험을 통해 제조자 스스로 적합선언(Self Certification)을 내리거나 홍콩으로부터 승인된 제조자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안전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플러그·어댑터·램프홀더·유연성 전원코드·확장유닛·기밀형 전기히터 등 소비자 안전사고와 밀접한 품목은 홍콩이 정한 특별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주어져 장차 국내 관련업체들의 홍콩 수출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5월 2일 홍콩을 거쳐 운송되는 제품과 수출을 목적으로 홍콩서 제조되는 제품, 폐기물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공급된 제품, 이동하면서 사용하거나 상거래 약정에 따라 홍콩에 입항하지만 다른 장소로 공급되는 제품, AC 50V 또는 DC 1백 20V를 초과하지 않는 초저전압 구동제품 등은 예외 규정에 따라 EPSR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EPSR를 위반할 때는 첫 위반시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1년의 금고형을, 재위반시 50만달러의 벌금과 2년의 금고형을 받도록 명문화돼 있다』고 전제하며 『홍콩이 자체 시장보다는 동남아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큰 점과 중국·대만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이 안전규격 등 각종 규격 및 승인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관련업체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통부, '기술이전 촉진' 지침 제정 '지재권' 허용

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주관 연구기관에만 부여했던 지적재산권을 협약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기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책기관과 공동연구에 나서는 대학 및 기타 기관들도 기여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통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이전관련 절차 및 지원,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이전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료도 감면하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을 받을 때 초기에 내는 착수금을

감면해 주거나 징수기술료를 50%범위 내에서 줄여 주고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기술이전실을 예산 5억원, 인원 7명으로 대폭 보강, 기술 중개의 장으로 육성키로 했고 국내의 연구기관과 대학 및 기업체의 보유기술 실태 조사를 이전대상기술을 발굴, 희망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술이전 대상은 그간 정통부가 지원, 수행한 6백여 연구개발과제 성과와 관련기업 및 학계가 보유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이다.

정통부는 세계적으로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년 기술이전 결과가 1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수출계약·해외진출 기업 자금 최우선 지원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은 SW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SW공제조합은 최근 중소 SW업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SW수출 지원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 SW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시에도 현지법인 설립사무소 설치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SW수출과 관련된 지급보증을 하고 지원규모도 기존의 자금대여·채무보증·이해보증사업보다 2배 이상 우대지원한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안내**

중소기업청에서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알·선을 위해 첨부과 같이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및 운영

- 본청 및 지방청(소)등 12개소에 설치·운영
  - 본청 : 인력지원과, 지방청(소) : 지원협력과
-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구인·구직 D/B를 구축하여 취업 알선업무 수행

□ 대상

-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 특히 기술, 경영, 판로, 무역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장기적으로 일반기업의 퇴직전문인력도 취업알선
- 이용방법
- 퇴직전문인력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취업알선센터에 내방, FAX, 인터넷을 통해 이용
    - 다만,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 기업에 대한 자료제공은 필요 최소사항만 제공
  - 이용은 구직·구직자 모두 무료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 설치장소**

기 관 명	접수·상담부서	전화번호(☎)	전송(FAX)번호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2)503-7929	02)503-2512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지원협력과	051)335-4032	051)335-4334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27-0274	053)626-2604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2-6228	062)366-192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636-4028	042)626-1241
인천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32)818-8323	032)818-7469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331)294-6380	0331)294-6386
강원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361)56-6037	0361)56-6035
충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431)231-3381	0431)233-2838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652)213-1914	0652)211-8375
경남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551)62-5143	0551)62-5146
제주지방중소기업사무소	"	064)21-5560	064)21-5548